

도로공사신고 교통 통제 · 제한 협의 결과서 (2018.08.01.부터 적용)

통행의 금지(제한) 협의자	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	담당자 : 손동영 
차단 또는 제한 기간	2025. 03. 27. ~ 2025. 05. 25.(60일간)	

공 사 명		2025년 부산울산선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					
도로 공사기간(최장2개월)		접수 실제	2025.. 03. 27. ~ 2025. 05. 25.(60일간)				
공사시간		주간	08:30 ~ 17:00		야간	- ~ -	
공사구간							
교통통제		□1차로차단 ■2차로차단 ■3차로차단 □2개차로이상 동시차단 ■갓길차단 □램프차단 □광장부차단 □노주브차단 □터널차단 ■이동차단 ■기타 차단방법 명시(갓길차단(약식))					
신 고 인 (공사시행자)		성명	김선무		휴대전화	010-8325-7131	
		주소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69번길 18 동아프라자 301				
발 주 자		회사명	한국도로공사울산지사		전화번호	052-701-6256	
		담당자	손동영		휴대전화	052-701-6256	
시 공 자		회사명	(주)명성엔지니어링		전화번호	031-886-7422	
		담당자	이상훈		휴대전화	010-7607-0624	
		현장책임자	장진원		휴대전화	010-3943-3525	
안전시설물 (2차로차단)		지시표시등	공사안내판	교통안내판	라바콘	싸인보드	드럼
		12 (변화구간)	14	8	100 (필요수량만큼)	3	- (필요수량만큼)
		경광등	신호수		에어간판	인지매트	지향성스피커
		3	3 (그중에 로봇은 1 개)		2	3 set	1
		기타 안전시설물		-			
※ 차단방법이 2개 이상일 경우 “#별지” 활용		매 공사마다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안전시설은 규정된 수량 이상으로 설치합니다.					
특별 조치 사항		1. 터널을 2개 이상 연속하여 차단하는 경우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물을 추가설치 - 싸인카 1대, 경광등 1대, 에어간판 1대 이상을 설치 ※ 그 외 추가 설치는 별도지시에 따른다 2. 본선 교통차단 작업시 싸인카 3대 이상 배치, 지향성 스피커 사용 3. 갓길차단 작업시 내리막 및 급커브 구간은 “공사중” 입간판 2개(ex.400m, 700m) 추가설치 4. 싸인카 또는 작업차량을 갓길에 배치할 경우에는 라바콘 최소 5개 이상 측면 및 후방에 설치 5. 본선 2차로, 3차로 차단작업시 신호수(로봇 1대)를 완충구간에 필히 설치 후 작업 6. 1차로, 2차로, 3차로 등 본선 차단작업의 경우 주의구간 900m지점에 “차로변경 공사안내판” 설치 7. 터널차단 작업시에는 주의구간 시작지점과 변화구간 시작지점을 명확히 하여 서류로 제출 8. 주말 등 공휴일 작업은 원칙적 금지, 기상악화(눈,비,강풍 등)시 작업금지, 공사시간 준수 9. 신고 되지 않은 차단방법 사용 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(수량 부족 포함)경우에는 공사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보고조치 및 도로교통법 제69조에 의한 처벌됨을 고지함					
위 기재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공사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							
2025년 03월 21일							
(신고인)대표자		김 선 무		(인)	현장책임자		이 상 훈 (인)

1) 말미에 도로공사와 관련된 「교통관리 예시도」를 모두 첨부한다.

※ 터널차단 등 주의구간, 변화구간 지점설정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는 별도의 예시도를 첨부

통행의 금지(제한)협약서

1. 공 사 명 : 2025년 부산울산선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(터널,교량)
2. 차단 또는 제한구간 : , 부산울산선(부산울산고속도로) 전구간 양방향
3. 차단 또는 제한기간 : 2025. 03. 27. ~ 2025. 05. 25.(60일간)
(주간 08 : 30 ~ 17 : 00)
4. 사 유 : 부산울산선 구조물 정밀안전점검
5. 소통방법 : 도보점검, 갓길차단, 3차로 차단
2차로 차단시 1차로 소통, 3차로 차단시 1,2차로 소통
6. 시 공 사 : (주)명성엔지니어링
7. 감 독 관 : 도로안전팀 손동영 주임(010-3144-7119)
8. 기타/참고 : 우천 및 강풍으로 일정 변경 될 수 있음

도로교통법 제70조의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2025년 03월 21일

도로관리청(공사시행청) :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장



고속도로 순찰대 제 8지구대장 귀 하

- 붙 임 : 1. 안전관리계획서 1부.
2. 작업장 안전관리도 1부.
3. 도로공사 신고서 1부. 끝,